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0	10	1994. 4. 21.	총재 김명호

의안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5조

- 제의취지
- ① 현재 법원 공탁금에 대해서는 별단예금 최고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부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취급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별단예금의 최고이율을 인상 조정코자 하며
 - ② 종래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 설정하였던 가계우대정기적금 제도가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일반 정기적금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30
40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생 략)

(붙임)

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1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. 5. 2.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1994. 5. 1. 이전에 계약된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.</p>	<p>○ 시행일자 명시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 표> <u>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</u></p>	<p><별 표> <u>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6.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7. 별단예금</td> <td>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1.0%</td> </tr> <tr> <td>8. ~ 9.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10. 가계우대정기적금</td> 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, 계약액은 1인당 1,000만원 이내. 다만,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).</td> </tr> <tr> <td>11. ~ 17.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이율	1. ~ 6.	(생략)	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1.0%	8. ~ 9.	(생략)	10. 가계우대정기적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, 계약액은 1인당 1,000만원 이내. 다만,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).	11. ~ 17.	(생략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6.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7. 별단예금</td> <td>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2.0%</td> </tr> <tr> <td>8. ~ 9.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삭제)</td> </tr> <tr> <td>10. ~ 16.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이율	1. ~ 6.	(현행과 같음)	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2.0%	8. ~ 9.	(현행과 같음)		(삭제)	10. ~ 16.	(현행과 같음)	<p>○ 별단예금 요부리시 최고이율 인상</p> <p>○ 가계우대정기적금제도 폐지</p> <p>○ 호체상</p>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6.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1.0%																									
8. ~ 9.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10. 가계우대정기적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, 계약액은 1인당 1,000만원 이내. 다만,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).																									
11. ~ 17.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								
1. ~ 6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. 다만, 요부리시 연 2.0%																									
8. ~ 9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	(삭제)																									
10. ~ 16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